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 
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1년 11월 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 
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현재 우리 구의 중·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(안 제2조)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교육아동청소년과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(예관동), 전화:3396-4665, FAX:3396-8632, 메일: wsyseoul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개정안 1부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## **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일부개정 조례안**

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”로 한다.

### 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